

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(안)

의안 번호	91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1999. 3.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 원 장

1. 제안이유

-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제12조의2(위원회의 전문가 활용) 조문 신설
-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.
-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,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-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,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3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4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54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
-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

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(안)

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다음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위원회의 전문가 활용)

-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,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록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기 정 (안)
제12조(소위원회) ① (생략) ② (생략)	제12조(소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12조의2 (위원회의 전문가 활용)</u></p> <p>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,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